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한다.

제23조(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 간 상호조정)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단, 사이버대학의 경우 통·폐합되는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통·폐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통·폐합 전 편제완성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 후 편제완성정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폐합 후 대학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폐합 신청 전년도에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보율은 통·폐합 후 유지되는 학교와 동일한 종류의 학교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25조(법인 분리에 따른 대학 설립 시 설립 기준 특례) ①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별도법인을 신설하고, 운영 중이던 학교의 일부를 신설법인 소속으로 두는 경우, 제4조 내지 제8조의 설립기준 대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신설될 경우 기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한다.

1. 다수 대학만을 운영하던 법인이 분할될 경우 법인 신설 신청 당시 각 법인 소속 대학의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귀속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대학의 소속법인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분리할 경우, 법인 신설 신청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이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할 법인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
3. 다수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다수의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할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해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별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귀속한다.

제26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설립주체가 제4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의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개편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3조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 및 통·폐합에 따른 정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운영 및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당초 입법예고('22.12.30.~'23.2.13.) 내용>	추가 개정안
통·폐합 범위 관련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를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	제18조(학과·정원의 증설·증원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는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서 및 1~2호 부분(통·폐합 관련 사항)은 ‘개정안 제23조’로 이동 [별표 1의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삭제 제23조(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간 상호조정)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당초 입법예고 내용과 같음> 제23조(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간 상호조정)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구분	현행	개정안 <당초 입법예고('22.12.30.~'23.2.13.) 내용>	추가 개정안
	시하는 기준에 따른 것	<u>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통·폐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통·폐합 전 편제완성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 후 편제완성정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폐합 후 대학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1.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를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u>통·폐합 신청 전년도</u>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보율은 통·폐합 후 유지되는 학교와 동일한 종류의 학교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것	<u>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단, 사이버대학의 경우 통·폐합되는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한다)</u>이 통·폐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통·폐합 전 편제완성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 후 편제완성정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폐합 후 대학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를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u>통·폐합 신청 전년도</u>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보율은 통·폐합 후 유지되는 학교와 동일한 종류의 학교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것
법인 분리 관련	<신설>	-	<u>제25조(법인 분리에 따른 대학 설립 시 설립 기준 특례)</u> ①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별도법인을 신설하고, 운영

구분	현행	개정안 <당초 입법예고('22.12.30.~'23.2.13.) 내용>	추가 개정안
			<u>중이던 학교의 일부를 신설법인 소속으로 두는 경우, 제4조 내지 제8조의 설립 기준 대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신설될 경우 기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한다.</u> <u>1. 다수 대학만을 운영하던 법인이 분할될 경우 법인 신설 신청 당시 각 법인 소속 대학의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귀속</u> <u>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대학의 소속법인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분리할 경우, 법인 신설 신청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이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할 법인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u> <u>3. 다수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다수의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할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u>

구분	현행	개정안 <당초 입법예고('22.12.30.~'23.2.13.) 내용>	추가 개정안
			규칙 제8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해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별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귀속한다.
대학 설립 심사 위원회 관련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 및 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설립주체가 제4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3조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설립주체가 제4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3조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대학	<신설>		제27조(구조개혁을 위한 <u>대학개편심사위원</u>

구분	현행	개정안 <당초 입법예고('22.12.30.~'23.2.13.) 내용>	추가 개정안
개편 심사 위원회 신설			<u>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제23조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 및 <u>통·폐합에 따른 정원에 관한 사항</u>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운영 및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